

■ 법률 칼럼

### 601A 면제: 불법입국/불법체류 면제를 통한 영주권 신청 (최근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한인분들이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으로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더라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못해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이외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90년대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사실상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1. 승인 요건

1) 이미 승인된 청원서 (Petition)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 즉 가족초청 (I-130), 취업이민 초청(I-140), 종교이민 (I-360)등의 청원서가 이미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National Visa Center 절차 (이민비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가족이란 배우자와 부모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가 있는데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정답은 면제 신청인이 승인가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친지 (qualifying relatives)는 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 또는 배우자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Factor는 아닙니다.

3) 601A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의 증명이 가장 면제 준비에서 어려운 절차입니다. 상세한 법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민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가족의 건강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우울증 등)과 관련된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등에 관한 증거들을 면제 신청 시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도록 하십시오.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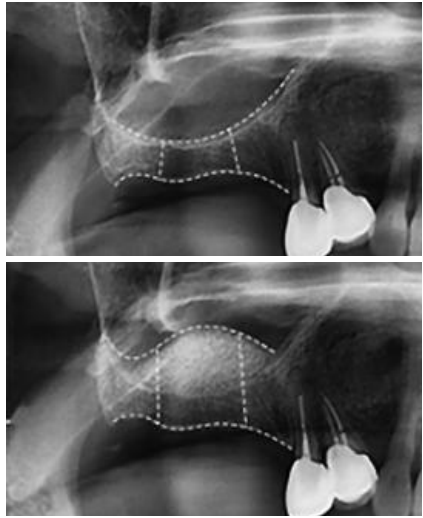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상악동거상술 어려운 이유,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질환

상악동은 코 옆 부분에 위치한 한 쌍의 공동으로, 안쪽은 코 안의 점막으로 덮여 그 속에는 공기가 들어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 주저앉은 상악동 바닥부위(위 사진), 상악동거상술 후 잇몸뼈의 높이 회복(아래 사진). 사진=Star 28 Dental

상단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 식립할 수 있는 골 높이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사진과 같이 상악동거상술 후 골 높이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임플란트 식립 후 예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악동거상술 없이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상악동 부위가 손상되고 비염과 축농증 같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턱 임플란트는 아래턱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위턱은 아래턱보다 밀도가 낮고 얇은 뼈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술 시 상악동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술자의 경험과 고도의 시술 노하우, 안전한 장비를 갖춘 치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축농증(부비동염)'입니다. 축농증이 있는데 임플란트를 하면 염증성질환이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까지 번져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임플란트가 흔들

리고 불안정해집니다. 거꾸로 원래 축농증이 없더라도 임플란트 후에 축농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치조정접근법(Crestal Approach)과 측방접근법(Lateral Window Approach)

1. 치조정접근법은 상악동을 위로 거상시키는 방법. 남은 뼈의 길이가 3mm이상인 경우.

수술시간이 길지 않고, 수술 후 붓기와 통증이 상대적으로 적음. 하지만 블라인드 상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골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음.


2. 측방접근법은 상악동의 측면에 구멍을 내는 방법. 남은 뼈가 2mm 이하인 경우.

직접 확인하면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좋고, 옆쪽으로 거상하면 압력도 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 안전하고, 수술 실패 확률이 적음. 하지만, 수술 부위가 크고, 많은 뼈의 양과 긴 수술 시간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큼.

그러므로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 시술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보다 효과적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존치료(신경치료, 치근단절제술 등)로 되살릴 수 없이 망가진 치아는 재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치과적 질환은 약을 바르고 먹어서 회복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치과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 예방입니다. 가급적 임플란트 없이 자연치아를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상악동거상술이 동반되는 어려운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치과별 가격 비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담당주치의 약력, 임플란트 재료, 사후관리, 부작용 예방법 등을 비교하고 풍부한 경험이 보증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icheal Han D.D.S  
Star 28 Dental Clinic  
TEL (714) 523-2828  
goteamhcd@gmail.com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Buena Park에서 Fullerton으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